

● 중소기업부공고 제2024-450호

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8월 13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**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 입법예고**

1. 개정이유

불공정거래 수탁·위탁거래 방지를 위해 표준약정서 제정·개정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'24. 11. 1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(삭제) 제5조(표준약정서의 고시)

- 해당 조항 내용을 법령\*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삭제 필요

\* 상생협력법 제21조의3(표준약정서의 제정·개정 등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

- 전자우편 : bluesky82@korea.kr

- 팩스 : 044-204-7949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(전화 044-204-7915, 팩스 044-204-794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